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태훈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0년 5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20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,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-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 시설에 대한 정의 조항을 만들어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을 가능하게 하며, 이를 통해 우리 도의 투자유치를 보다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신설(안 제40조의3)
 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으로 함.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 제28호에서 지정하고 있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40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으로 하는 것임.
- 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 기준을 “한국표준분류상의 제조업”으로 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을 가능하게 하며, 이를 통해 우리 도의 투자유지를 보다 유리하게 할 수 있다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